

#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4년 12월 8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4년 12월 9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16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(2004년 12월 14일) 상정의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주민자치과장 박한권)

### 제안이유

- 통장자녀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을 구청장이 결정하고 있으나, 앞으로는 시장이 결정하여 다른 장학금과의 형평성 등 효율적으로 운영 하려는 것임.

### 주요골자

-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권자를 구청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함.(안 제3조 내지 제5조)

### 3. 질의 및 답변요지

| 질의 내용   | 답변 내용   |
|---|---|
| <p>○ 장학금 선발 및 지급을 시장이 하게 되면 도리어 타 장학금과 중복될 수 있다고 보는데?</p> | <p>○ 다른 장학금과의 중복여부를 구나 시가 파악하므로 거의 그런 경우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.</p> |

### 4. 토론요지

#### 가. 찬성토론

○ 없음

#### 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### 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### 6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음

### 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#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<br>번호  | 제328호                 |
| 의결<br>년월일 | 2004.12.23<br>(제116회) |

제출년월일 : 2004. 12. 8.  
제출자 : 부천시장

## □ 제안이유

- 통장자녀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을 구청장이 결정하고 있으나, 앞으로는 시장이 결정하여 다른 장학금과의 형평성 등 효율적으로 운영 하려는 것임.

## □ 주요골자

-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권자를 구청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함.  
(안 제3조 내지 제5조)

부천시조례 제 호

##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중 “구청장에게 추천한다”를 “구청장에게 추천하고, 구청장은 시장에게 제출한다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·제5조 및 제9조중 “구청장”을 “시장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| 개 정 안   |
|--|---|
| <p>제3조(추천) 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<u>구청장에게 추천한다.</u></p>          | <p>제3조(추천) 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<u>구청장에게 추천하고, 구청장은 시장에게 제출한다.</u></p>       |
| <p>제4조(선발) ①<u>구청장</u>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속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.</p> <p>②(생략)</p> | <p>제4조(선발) ①<u>시장</u> 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5조(장학생의 정원) 장학생은 연간 통장 정수의 15%이내로 하되, 예산의 범위안에서 <u>구청장</u>이 결정한다.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제5조(장학생의 정원) -----<br/>-----<br/>-----<u>시장</u>-----<br/>-----</p>                 |
| <p>제9조(장학금 재원)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<u>구청장</u>이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</p>  | <p>제9조(장학금 재원) -----<br/>-----<u>시장</u>-----<br/>-----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|